

최종보고서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2020. 10.

제 출 문

강원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0.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서론	3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4
3. 과업의 추진방법	5
II. 기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	9
1. 기금 제도	9
2. 기금 현황	15
III. 기금의 운용현황과 시사점	57
1. 재정지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57
2. 기금의 신축적 운용현황	64
3. 시사점	68
IV.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강원도 발전	73
1. 주거정책과 주택도시기금 현황	73
2. 지자체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이양 해외사례	80
3. 강원도 발전방안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81
V. 정책적 제언	101

표 목 차

<표 II-1> 기금의 주요 특징	9
<표 II-2> 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의 분류	10
<표 II-3> 기금제도의 연혁	12
<표 II-4> 시기별 주요설치 기금	12
<표 II-5> 기금 관리체계	14
<표 II-6> 기금의 운용 및 조성현황	16
<표 II-7> 부처별 사업성 기금 설치현황	18
<표 III-1> 기금 수입구조 추이(단위 : 억원, %)	59
<표 III-2> 기금별 운용규모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2017년 기준)(단위: 억원, %)	60
<표 III-3> 기금별 운용규모 대비 특별회계전입금 비중(2017년 기준)(단위: 억원, %)	61
<표 III-4> 기금 지출구조 추이(단위: 억원, %)	61
<표 III-5>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추이(2017년 기준 상위 5개)	63
<표 III-6>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중(2017년 기준 50% 이상 기금)	63
<표 III-7> 회계·기금 세출(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	65
<표 III-8> 기금 성격별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	66
<표 III-9> 사업성기금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감(상위 5개 기금)	67
<표 III-10> 사업성기금별 사업비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상위 5개 기금)	67
<표 IV-1> 지역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대출액) 비율(PIR, LIR)	75
<표 IV-2> 영국 정부 주택정책의 변화	80
<표 IV-3> 인구수대비 임대주택 공급비율(인구 : 2015년, 임대주택 : 2018년)	84
<표 IV-4> 주택도시기금 추정 재무상태표(단위 : 억원, %)	94
<표 IV-5> 주택도시기금 추정손익계산서(단위 : 억원, %)	95

그림 목차

<그림 II-1> 기금 운용체계	13
<그림 III-1> 재정지출 규모 추이(총지출 기준)(단위 : 조원)	57
<그림 III-2> 재정지출 규모 추이(총계 기준)(단위 : 조원)	58
<그림 III-3> 기금 여유자금 추이(단위: 조원, %)	62
<그림 III-4> 기금과 회계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 추이(단위: %)	64
<그림 III-5> 기금 성격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감률 추이	66
<그림 IV-1>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73
<그림 IV-2> 임대주택 공급주체 현황	74
<그림 IV-3> 공급주체별 국민임대주택 재고물량	74
<그림 IV-4> 저소득계층 주택소유 비율(%)	75
<그림 IV-5> 저소득계층 월세 비율(%)	75
<그림 IV-6> 지역별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76
<그림 IV-7>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77
<그림 IV-8>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도시기금 대출실적 비교(단위 : %)	78
<그림 IV-9>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도시기금 보증실적 비교	78
<그림 IV-10>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별 보증잔액(단위 : 억원)	79
<그림 IV-11> 지역별 인구대비 임대주택 필요 공급량	83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I 서론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추진방법

I 서론

1.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중심적 운영으로 지역은 소외받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대부분 지역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기금 활용에 있어서는 인구 중심의 배분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은 소외받고 있음.
-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서민주거정책은 원래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주택정책의 수급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화, 지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주거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 미흡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
- 현재의 서민주거정책과 주택도시기금은 획일화 되고 한 곳으로 편중되어 공정하지 못함.
-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서민주거정책과 주택도시기금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2.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기준 기업체 현황

□ 공간적 범위

- 기금현황(전국), 활용방원(강원도 또는 지역)

□ 내용적 범위

- 중앙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금의 현황 분석

- 법령에 의해 운영중인 기금의 종류, 목적
- 2019년 기준 기금 규모 및 재정상태 분석

- 중앙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금의 문제점 도출

- 조성방법과 활용실태 분석(기금의 합목적성 검토)
- 지역중심의 조성권(인구) 중심의 활용 문제점 도출

- 해외 사례 분석

- 지역중심 운영 중인 기금의 해외사례 분석
- 국내 기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고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주택도시기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금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 및 진단을 이끌어내고자 함
- 수도권 중심의 운영중인 기금을 지역 중심의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특히, 기금운용의 지자체 이양 등 지역 활용방안 제시
- 기금운영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과업의 추진방법

○ 제1단계(중앙정부 운영기금 현황 검토)

- 법령에 의해 운영중인 기금 종류, 목적의 검토
- 조성방법과 활용실태 분석(기금 합목적성)
- 지역중심의 조성권(인구) 중심의 활용 문제점 도출

○ 제2단계(해외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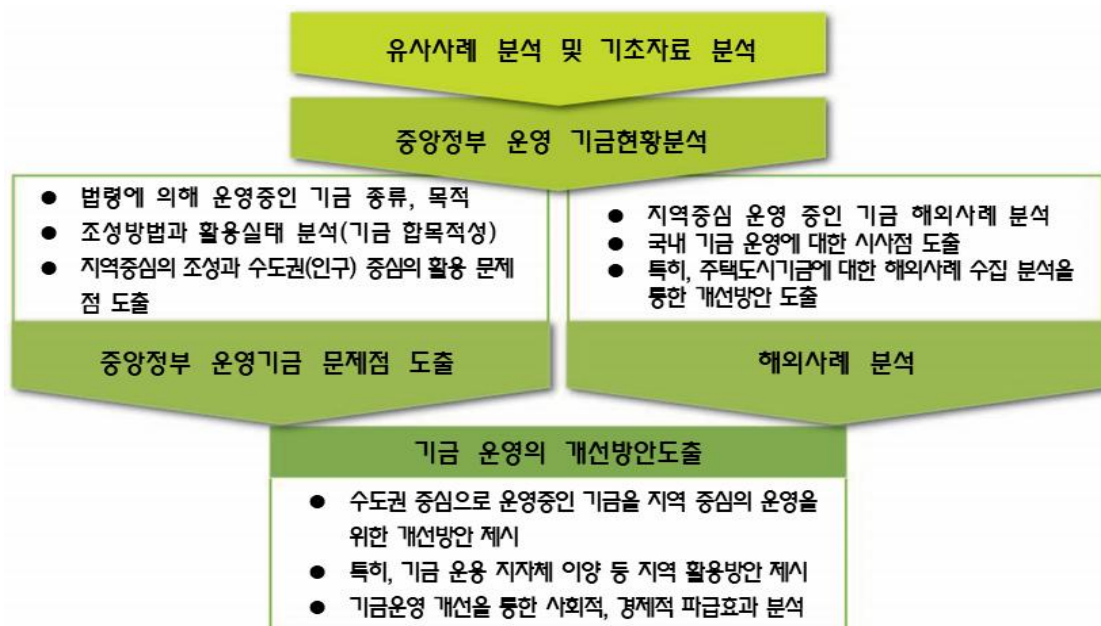
- 지역중심 운영 중인 기금 해외사례 분석
- 국내 기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특히,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제3단계(기금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중인 기금을 지역 중심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특히, 기금운영 지자체 이양 등 지역 활용방안 제시
- 기금운영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제4단계(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 운영 기금을 활용한 강원도 발전 전략 제시



〈그림 1-1〉 과업의 추진방법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II 기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기금 제도
2. 기금 현황

II 기금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기금 제도

1) 기금의 의미와 구분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 국가 고유의 일반재정활동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되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사업의 특성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운용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함.
 - 그러나 특별회계보다 더 융통성이 요구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회계보다 운영상 자율성이 높음.

〈표 II-1〉 기금의 주요 특징

	주요특징
설치사유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거나,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계획변경	-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 비금융성기금: 20% 초과 변경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결산	- 국회 결산에서 심의·의결

□ 기금은 설치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구분되며, 총 67개가 있음.

○ 사업성기금은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48개

○ 금융성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8개

○ 사회보험성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6개

○ 계정성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5개

〈표 II-2〉 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의 분류

	주요특징
사업성기금	-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금융성기금	-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기보다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사회보험성기금	-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정성기금	-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2) 기금의 법적 근거 및 연혁

□ 현행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기금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이며,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는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이 있음.

○ 사업의 특성 상 농어업재해재보험, 응급의료기금 등은 예산으로 운용될 경우 예산에 적용되는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설치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 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의 신설에 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기금신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설

〈「국가재정법」 제14조(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기준)〉

-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 우리나라 기금은 1960년에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대한교통안전협회기금 등이 설치를 되면서 도입

-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
 - 「예산회계법」에서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설치 근거만 있을 뿐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 없이 기금운영주체의 자율에 따라 운용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수와 규모가 방대해짐.
-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6년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예산과 기금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합 운영중임.
- 기금제도는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통하여 현행 「국가재정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금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연혁은 <표 II-3>과 같고, 시기별로 주요 설치 기금은 <표 II-4>와 같음.

〈표 II-3〉 기금제도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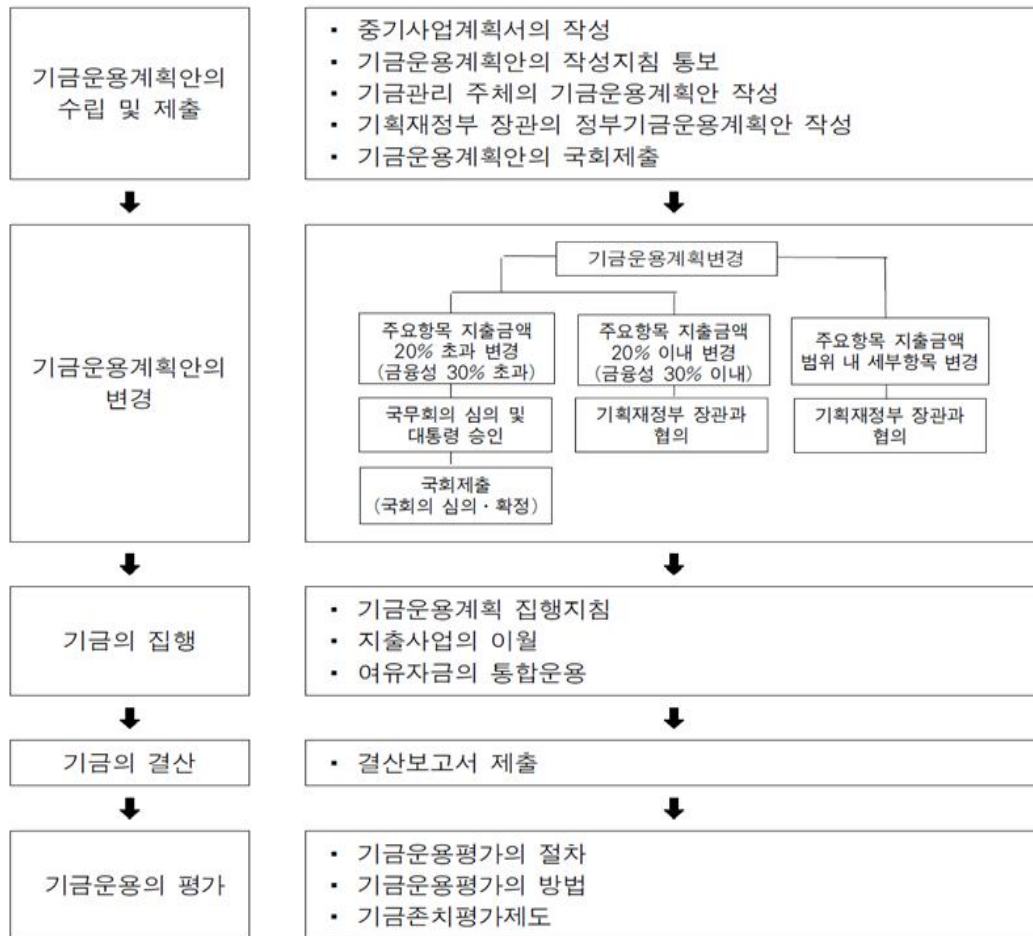
년도	주요내용
1960년	1960년 도입 -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대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3개 설치
1961년	「예산회계법」제89조 개정으로 기금 설치근거 마련 - 회계로 구성된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기금 설치규정 마련
1973년	「예산회계법」제89조 개정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강화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제정 - 기금제도 전반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을 재정운용과 연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
1993년	- ‘정부관리기금’은 ‘공공기금’으로 ‘민간관리기금’은 ‘기타기금’으로 정의 변경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개정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예산과 기금의 통합운용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제정

자료: 박기영(2014), 「한국재정」, 범우사.

〈표 II-4〉 시기별 주요설치 기금

년도	설치기금
1960년대	- (적립성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 (사업 및 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애국지사사업조달기금, 과학교육기금, 원조회전기금 등
1970년대	- (사업 및 관리기금) 양곡관리기금, 종자기금, 재형저축권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등 - (융자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석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 국민투자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농업기계화촉진기금, 해운진흥기금, 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 등
1980년대	- (사업 및 관리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진폐기금, 농어촌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등 - (융자기금) 국민주택기금, 기계공업진흥기금, 보훈기금, 수산진흥기금, 전자공업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등 - (적립성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체신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 이상의 기금 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음.



〈그림 II-1〉 기금 운용체계

3) 기금평가제도

□ 기금의 운용실태 점검·평가

-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는 있으나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용상 자율성이 높아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1999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기금운용의 감독·평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부터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

□ 기금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성

-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
 -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04년도에 처음 기금존치평가가 실시
 - 기금존치평가는 「국가재정법」 제 82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국가재정법」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심사’와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기금별 존립·폐지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태(자산운용)를 평가하는 제도
 - 평가방식은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평가
 - 평가 영역 중 경영개선·사업운영 부분에서는 경영혁신 노력과 개별사업의 타당성·성과·효율성에 대하여 평가
 - 자산운용 부분에서는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동일 그룹 내에서 부문별로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 단계별 기금의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5> 과 같음.

<표 II-5> 기금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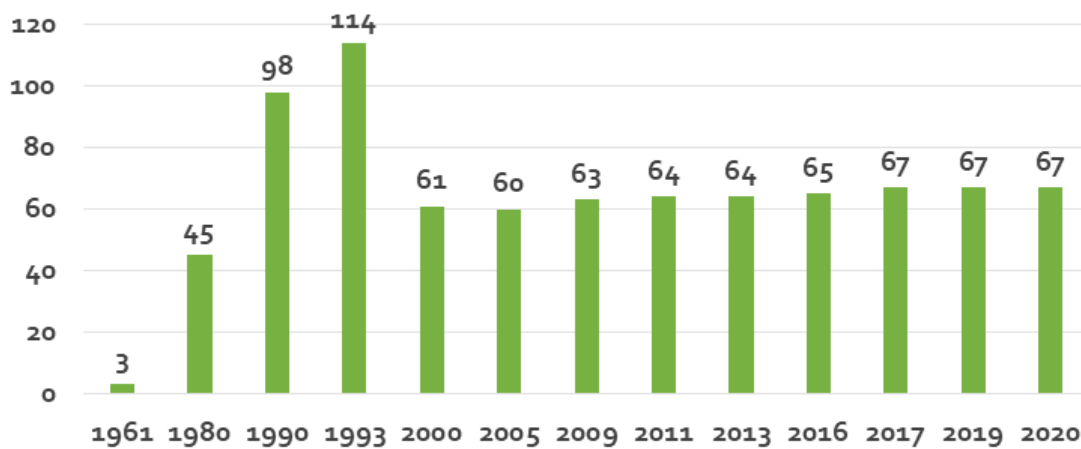
운용단계	관리단계	기금운용 주체	내부통제	외부통제		
				의회	기금운용평가단 (기획재정부)	감사원
예산편성	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성과계획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국회 심의·의결	기금운용평가 (사업/자산) 기금존치평가	Audit
계획변경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국회 심의·의결		
예산집행		수입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국정감사·조사		
결산	성과보고 및 분석	결산보고서 (첨부: 성과보고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국회 심의·의결		

2. 기금 현황

1) 기금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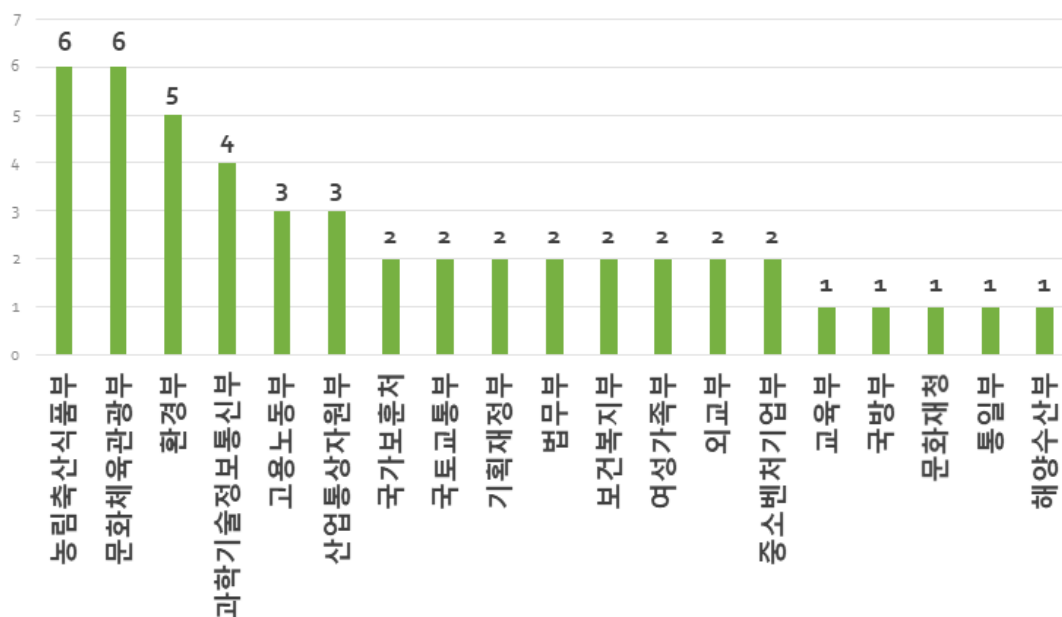
□ 기금은 2020 기준으로 6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기금은 제도 도입 후 1993년 114개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4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기금통폐합 노력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57개 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6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II-2〉 연도별 기금 수 추이

○ 부처별 사업성 기금 설치 현황



〈그림 II-3〉 부처별 기금 설치 현황

□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6>와 같음.

<표 II-6> 기금의 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기금명	운용			조성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2018년말 (누계)	2019년말 (누계)	2020년 계획	
						당년도	누계
고용보험기금	144,724	156,358	181,513	74,669	53,586	△14,202	39,384
공공자금관리기금	1,607,496	1,791,207	2,191,043	6,180,545	6,661,920	724,303	7,386,223
공무원연금기금	218,045	209,621	229,758	103,523	100,240	△172	100,068
공적자금상환기금	34,272	84,578	104,313	1,250	820	301	1,121
과학기술진흥기금	1,751	1,818	2,625	298	396	50	446
관광진흥개발기금	10,943	12,466	15,185	22,025	23,545	597	24,142
국민건강증진기금	37,516	39,262	42,448	2,610	2,490	286	2,776
국민연금기금	1,350,128	1,454,176	1,329,189	5,655,446	6,063,088	405,366	6,468,454
국민체육진흥기금	19,796	29,708	26,073	16,225	25,012	3,427	28,439
국유재산관리기금	13,619	19,772	16,095	14,585	9,386	△2,955	6,431
국제교류기금	2,079	1,503	1,936	1,975	1,864	34	1,898
국제질병퇴치기금	827	868	1,004	449	460	△136	324
군인복지기금	12,010	13,107	8,483	9,645	9,173	△529	8,644
군인연금기금	32,960	34,495	35,305	11,623	12,444	258	12,702
근로복지진흥기금	3,082	3,411	3,552	3,842	4,055	140	4,195
금강수계관리기금	1,309	1,379	1,465	103	243	68	31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76	2,699	2,639	233	219	△42	177
남북협력기금	6,411	4,008	19,027	29,606	29,741	2,319	32,06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852	23,390	24,808	39,286	38,407	△554	37,85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82	4,136	4,988	1,676	617	1,172	1,789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	-	26,314	-	-	26,314	26,314
농지관리기금	38,680	35,017	32,642	86,031	90,300	3,050	93,35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1,787	48,480	57,196	67,745	73,130	3,920	77,050
대외경제협력기금	9,224	12,781	14,125	54,585	62,085	9,894	71,979
문화예술진흥기금	3,152	4,321	5,439	921	1,604	651	2,255
문화재보호기금	1,300	1,433	1,510	196	215	△102	11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55	1,025	1,035	760	822	23	845
방송통신발전기금	11,874	12,429	12,085	5,541	4,354	△2,381	1,97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0,137	93,280	124,312	184,561	207,045	12,682	219,727
보훈기금	3,355	4,166	6,682	9,881	9,715	△59	9,656
복권기금	53,748	58,070	57,377	1,399	1,425	290	1,7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52	946	1,157	197	559	202	761
사학진흥기금	5,319	3,983	5,605	15,291	15,829	1,240	17,06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749	2,033	2,203	827	755	△348	407

기금명	운용			조성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	2018년말 (누계)	2019년말 (누계)	2020년 계획	
						당년도	누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7,784	106,576	163,594	179,755	195,932	20,856	216,788
석면피해구제기금	362	347	607	183	133	85	2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9,878	33,533	33,087	2,003	3,456	-	3,456
수산발전기금	6,752	6,763	8,600	10,021	9,910	45	9,955
양성평등기금	2,591	4,347	4,491	250	239	83	322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430	1,976	1,370	1,475	1,436	19	1,455
양곡증권정리기금	5,086	4,357	13,603	△4,974	△4,948	△14	△4,962
언론진흥기금	251	291	313	36	75	26	101
영상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922	1,044	1,047	96	256	76	332
영화발전기금	2,933	2,637	2,695	3,556	3,472	△391	3,081
외국환평형기금	672,874	830,554	1,104,343	878,255	785,413	7,462	792,875
원자력기금	3,887	4,342	4,647	1,256	1,699	85	1,784
응급의료기금	3,926	4,036	2,948	1,667	565	△678	△11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99	2,597	2,336	△156	△65	△6	△71
임금채권보장기금	8,137	8,271	8,853	10,161	9,981	453	10,4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2,510	11,822	12,511	11,044	12,776	1,643	14,419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6,608	6,647	5,999	12,370	13,081	11	13,092
지역신문발전기금	98	102	104	21	29	△10	19
전력산업기반기금	33,275	31,536	49,696	50,964	55,649	7,021	62,670
정보통신진흥기금	12,128	12,731	11,377	7,084	4,890	△2,447	2,443
주택도시기금	693,213	745,935	844,191	3,081,926	3,163,386	26,795	3,190,181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89,510	86,634	96,340	185,115	197,188	11,975	209,163
청소년육성기금	1,337	1,427	1,642	631	622	△42	580
축산발전기금	10,209	10,118	11,235	16,865	15,863	△825	15,038
한강수계관리기금	6,157	6,722	6,510	1,678	1,970	2	1,972
기금 소계	5,501,567	6,091,271	6,981,270	17,048,831	17,978,552	1,247,331	19,225,883
기술보증기금	30,670	28,510	27,686	16,761	16,751	△1,264	15,48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264	17,692	11,307	15,306	10,449	△2,286	8,163
무역보험기금	31,900	30,662	37,423	14,766	19,696	1,474	21,17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027	6,488	6,570	7,754	8,027	359	8,386
신용보증기금	81,187	77,544	76,427	50,909	53,377	△4,899	48,4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244	56,582	65,760	90,110	100,142	6,373	106,515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58,989	26,436	40,503	△33,632	△31,769	11,893	△19,876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830	708	680	-	-	13	13
금융성 소계	261,111	244,622	266,356	161,974	176,673	11,663	188,336
합 계	5,762,678	6,335,893	7,247,626	17,210,805	18,155,225	1,258,994	19,414,219

2) 부처별 사업성 기금 설치현황

○ 부처별 사업성 기금 설치현황은 아래 <표 II-7>와 같으며, 기금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표 II-7> 부처별 사업성 기금 설치현황

기금명	근거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기금명	근거법률	주무부처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법무부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해양수산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원자력기금	원자력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3) 중앙정부 운용기금별 개요

□ 고용보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 ○ 목적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설치연도	1995년	운용개시연도	1995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관리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조성재원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 보험료: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보험료율</th></tr> <tr> <th>근로자</th><th>사업주</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실업급여</td><td>0.8%</td><td>0.8%</td></tr> <tr> <td rowspan="4">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td><td>150인 미만</td><td>-</td><td>0.25%</td></tr> <tr> <td>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td><td>-</td><td>0.45%</td></tr> <tr> <td>150인 이상 1,000인 미만</td><td>-</td><td>0.65%</td></tr> <tr> <td>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사업</td><td>-</td><td>0.85%</td></tr> </tbody> </table>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사업	-	0.85%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사업	-	0.85%																							
기금의 용도 (고용보험법 제80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실업급여의 지급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 보험료의 반환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 목적 :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재정차관자금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총괄계정·용자계정·차관계정을 구분		
설치연도	1994년	운용개시연도	1994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조성재원 (제3조~제5조)	○ 제3조 내지 5조(기금의재원) 1. 예수금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다른 계정 등으로 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예탁금 원리금 수입 5. 채권 등 유가증권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 8. 보증채무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구상금 등		
기금의 용도 (제3조~제5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실업급여의 지급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 보험료의 반환 등		

□ 공무원연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6조 ○ 목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설치연도	1960년	운용개시연도	1960년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구성재원 (조항)	○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 :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20년 기준)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20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20년 9.0%)		
기금의 용도 (조항)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제1항 ○ 목적 :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재정이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에 대한 원활한 상환		
설치연도	2003년	운용개시연도	2003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금융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제잉여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한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		
설치연도	1992년	운용개시연도	1992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성재원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2항)	○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		
기금의 용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3항)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 목적: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 이바지		
설치연도	1972년	운용개시연도	1973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성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법정부담금(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 용자 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기금의 용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 관광상품개발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 국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등 용자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 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		
설치연도	1995년	운용개시연도	1997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관리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자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용도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2.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국민연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설치연도	1988년	운용개시연도	1988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관리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조성자원 (제101조)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	○ 국민연금급여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국민연금법 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국민연금법 제102조)		

□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 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설치연도	1972년	운용개시연도	1989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성재원 (제20조 제2항)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제22조)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2항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센터 운영 등		

□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		
설치연도	2011년	운용개시연도	2012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기획재정부
구성재원 (제26조의3)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과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기금의 용도 (제26조의5)	○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제교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 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설치연도	1991년	운용개시연도	1992년
주무부처	외교부	관리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구성재원 (조항)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 국제질병퇴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 목적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		
설치연도	2017년	운용개시연도	2017년
주무부처	외교부	관리주체	외교부 (위탁운용 : 한국국제협력단)
구성재원 (조항)	○ 정부 출연금 ○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퇴치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군인복지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 목적 :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		
설치연도	1996년	운용개시연도	1996년
주무부처	국방부	관리주체	국방부
구성재원 (조항)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 군인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 군인복지기금 재산의 매각대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 - 주거지원과 관련된 입주보증금, 퇴거지연금, 상환지연이자		
기금의 용도 (조항)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사업 - 복지시설 등의 신설 및 증설 - 군인 등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 군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 전역예정장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 군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		

□ 군인연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군인연금법 제37조 ○ 목적 : 퇴역군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설치연도	1960년	운용개시연도	1963년
주무부처	국방부	관리주체	국방부장관
구성재원 (조항)	○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 책임준비금 - 기금의 운용수익 -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그 밖의 수입		
기금의 용도 (조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 그 밖의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설치연도	1993년	운용개시연도	1994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구성재원 (제8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제91조)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금강수계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목적 : 금강수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설치연도	2002년	운용개시연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관리주체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금강 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과 그 밖의 재원 ○ 물이용부담금(물사용량 × 부과율(170원/톤))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 차입금 ○ 매수한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 등의 매도금액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등의 매수사업 ○ 오염총량관리 지원 및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환경기초조사사업 등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목적 :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설치연도	2002년	운용개시연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관리주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물사용량 × 부과율(170원/톤))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 차입금 ○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 등의 매도금액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주민지원사업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 ○ 토지 등의 매수사업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 오염총량관리 등		

□ 남북협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설치연도	1991년	운용개시연도	1991년
주무부처	통일부	관리주체	통일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재원)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설치연도	1966년	운용개시연도	1968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제57조(기금의 용도)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3.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4.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21조 (기금의 설치) ○ 목적 :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설치연도	2005년	운용개시연도	2005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재보험료 ○ 정부출연금 ○ 정부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재보험금의 지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의 지출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금의 재원마련		
설치연도	2020년	운용개시연도	2020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조항)	○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 농지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설치연도	1981년	운용개시연도	1981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제32조)	○ 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		
기금의 용도 (제34조)	○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설치연도	2009년	운용개시연도	2009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구성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법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 목적 :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력을 촉진		
설치연도	1986년	운용개시연도	1987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위탁운용 : 한국수출입은행)
구성재원 (기금법 제4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기금법 제7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 (기금의 용도) 1~4.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설치연도	1973년	운용개시연도	1973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품 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 문화재보호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 목적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성		
설치연도	2010년	운용개시연도	2010년
주무부처	문화재청	관리주체	문화재청장
구성재원 (제4조)	○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정문화재 문화재관람료의 100분의 10 ○ 기금의 운용수익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용도 (제5조)	○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 목적 :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성		
설치연도	2011년	운용개시연도	2011년
주무부처	법무부	관리주체	법무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형사소송법」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설치연도	2000년*	운용개시연도	2000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통신 주파수 할당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전파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전파법」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 ○ 목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설치연도	1974년	운용개시연도	1975년
주무부처	교육부	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구성재원 (조항)	○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기금의 용도 (조항)	○ 부담금의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 보훈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 목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		
설치연도	1981년	운용개시연도	1981년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관리주체	국가보훈처
구성재원 (조항)	○ 보훈기금법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법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정부출연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비,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 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 복권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 목적 :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설치연도	2004년	운용개시연도	2004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기획재정부
구성재원 (조항)	○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공탁법 제28조 ○ 목적 : 공탁제도를 통해 발생한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을 일반국민에게 환연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함		
설치연도	2016년	운용개시연도	2016년
주무부처	대법원	관리주체	법원행정처장
조성재원 (공탁법 제29조)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공탁금 운용수익금 일부를 출연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공탁금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기금의 용도 (공탁법 제31조)	○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 국선번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 조정제도의 운용 ○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 및 국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사학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목적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		
설치연도	1989년	운용개시연도	1989년
주무부처	교육부	관리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조성재원 (제18조)	○ 정부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기금의 용도 (제19조)	○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실바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		
설치연도	2015년	운용개시연도	2015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 4, 제37조의 5]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 4, 제37조의 5] ○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 목적 :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보험급여 충당		
설치연도	2002년	운용개시연도	2002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구성재원 (제95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 제95조제2항 1.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3. 기타수입금		
기금의 용도 (제9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 제96조(기금의 용도)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용도 4.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5.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연 6.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 석면피해구제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 ○ 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 충당		
설치연도	2011년	운용개시연도	2011년
주무부처	환경부	관리주체	환경부 장관
구성재원 (제24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대상사업장 연간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10만분의 3)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출연금(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여유자금) 등		
기금의 용도 (제25조)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 목적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설치연도	2015년	운용개시연도	2015년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구성재원 (조항)	○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		

□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 목적 :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설치연도	1999년	운용개시연도	2001년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관리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수산물 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 차입금 또는 차관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기르는 어업의 육성, 어업경영기금의 융자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 수산물의 보관·관리, 새로운 어장의 개발,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수입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 양성평등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1항 ○ 목적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설치연도	1996년	운용개시연도	1997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구성재원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2항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 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		
설치연도	1967년	운용개시연도	1968년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관리주체	국가보훈처장
구성재원 (조항)	○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 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사로 발굴사업 ○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양곡증권정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양곡관리법 제25조 ○ 목적 :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한 양곡증권의 원리금과 차관양곡의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설치연도	1994년	운용개시연도	1994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양곡관리법 제25조(기금의 설치)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		

□ 언론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설치연도	2010년	운용개시연도	2010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구성재원 (조항)	○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용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목적 :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		
설치연도	2002년	운용개시연도	2002년
주무부처	환경부	관리주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따른 물이용부담금과 그 밖의 재원 * 물이용부담금(물사용량×부과율(170원/톤)) *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 등의 매도금액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매수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등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 오염총량관리 지원 및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 영화발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목적 :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설치연도	2007년	운용개시연도	2007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등		

□ 외국환평형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 ○ 목적 :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설치연도	1967년	운용개시연도	1968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구성재원 (제13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2항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 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기금의 용도 (제13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국환 매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설치연도	1996년	운용개시연도	1997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3항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원자력진흥법 제19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설치연도	2016년	운용개시연도	2016년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상료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 응급의료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목적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설치연도	1994년	운용개시연도	1995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관리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과징금수입의 35%)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 - 「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설치연도	2017년	운용개시연도	2017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관리주체	손해보험협회
구성재원 (자배법 제39조의 12 제1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조성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자배법 제39조12 제2항)	○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등		

□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 목적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설치연도	1998년	운용개시연도	1998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주요사업: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체당금”) 지급 - 공인노무사 체당금 조력비용 지원 - 체불사업주 용자 지원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위탁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연금 -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급 -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 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설치연도	1991년	운용개시연도	1991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구성재원 (제69조)	○ 제69조(기금의재원)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 및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기금의 용도 (제71조)	○ 제71조(기금의용도)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설치연도	2004년	운용개시연도	2004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설치연도	2004년	운용개시연도	2005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설치연도	2001년	운용개시연도	2001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구성재원 (전기사업법 제50조)	○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 전기요금의 3.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전기사업법 제4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목적 :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설치연도	2005년*	운용개시연도	2005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재원 (조항)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 '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가 '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 주택도시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설치연도	1981년	운용개시연도	1981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구성재원 (조항)	○ 「주택도시기금법」제5조 - 자체재원 :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주택도시기금법」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주택법」제75조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4조, 「주택도시기금법」제23조 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용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용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목적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설치연도	1978년	운용개시연도	1979년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성재원 (조항)	○ 법 제64조(기금의구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가지출 2. 연수사업, 창업성공패키지 등 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		

□ 청소년육성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3조 ○ 목적 :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확보		
설치연도	1989년	운용개시연도	1989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관리주체	여성가족부
구성재원 (조항)	○ 청소년기본법 제54조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에 의한 출연금 3.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 축산발전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축산법 제43조 ○ 목적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		
설치연도	1974년	운용개시연도	1976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성재원 (조항)	○ 법 제44조(기금의재원) 1. 정부보조금 또는 출연금 2.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3. 기금운용수익금4. 차입금 등		
기금의 용도 (조항)	○ 법 제47조(기금의용도)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제20조 ○ 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설치연도	1999년	운용개시연도	1999년
주무부처	환경부	관리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한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과 그 밖의 재원 - 물이용부담금(물사용량 × 부과율(170원/톤)) -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 일시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등의 매수 사업 3. 친환경 청정산업의 지원 4.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		

□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설치연도	1989년	운용개시연도	1989년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구성재원 (제13조 제1항)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용도 (제28조)	○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 [금융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 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설치연도	1972년	운용개시연도	1972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농협중앙회
구성재원 (조항)	○ 법 제4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업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긴 순익금		
기금의 용도 (조항)	○ 법 제7조(기금의사용) 1.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2.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		

□ [금융성] 무역보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설치연도	1969년	운용개시연도	1969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구성재원 (제31조, 제35조 제1항)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기금의 용도 (제35조 제2항)	○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		

□ [금융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설치연도	1994년	운용개시연도	1995년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구성재원 (조항)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설치연도	1976년	운용개시연도	1976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구성재원 (제6조1항)	○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용도 (제23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채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		

□ [금융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설치연도	1987년	운용개시연도	1988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성재원 (조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및 제59조의3 1.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3.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		
기금의 용도 (조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및 제59조의4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		
설치연도	2003년	운용개시연도	2003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구성재원 (조항)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2항 1.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조항)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제3항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설치근거/목적	○ 근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 목적 :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설치연도	1985년	운용개시연도	1986년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관리주체	금융위원회
구성재원 (조항)	○ 정부의 출연금 ○ 한국은행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 (법 제7조)		
기금의 용도 (조항)	○ 농어민이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지급 (법 제6조)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III

기금의 운용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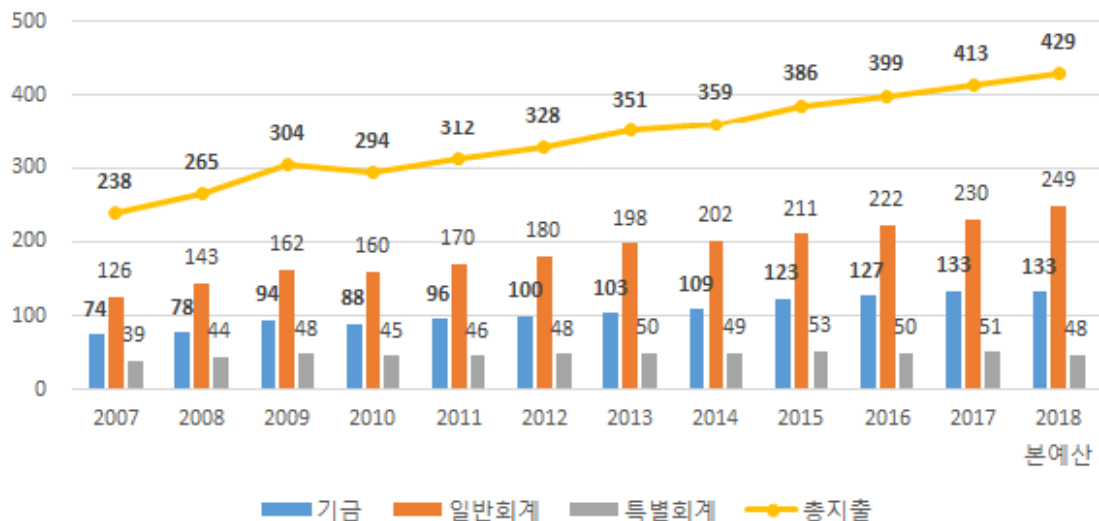
1. 재정지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2. 기금의 신축적 운용현황
3. 시사점

Ⅲ 기금의 운용현황과 시사점

1. 재정지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 재정지출 규모

- 2018년도 우리나라 재정의 총지출 규모(8)는 429조원으로, 이중 기금 133조원(전체 대비 30.9%), 일반회계 249조원(전체 대비 58.0%) 특별회계 47.5조원(전체 대비 11.1%)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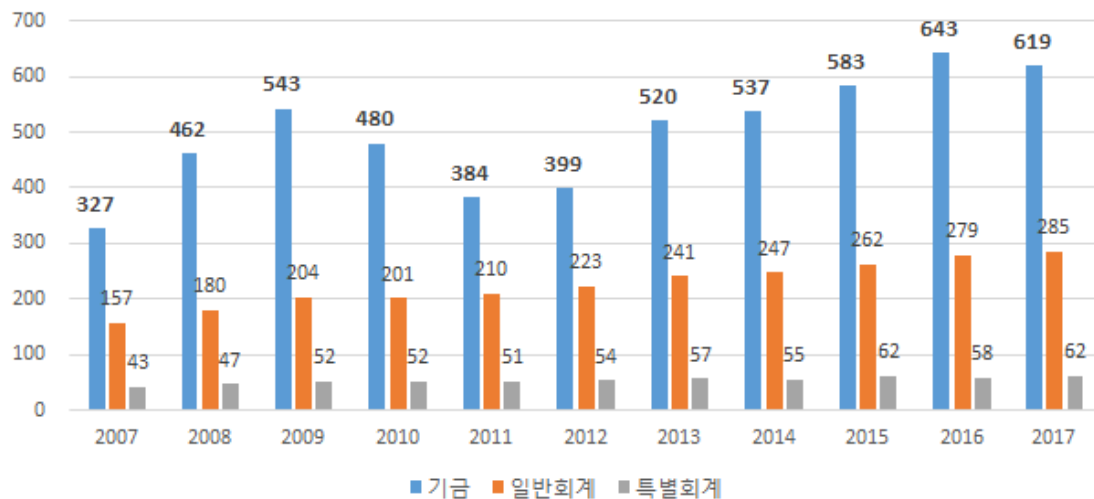
〈그림 Ⅲ-1〉 재정지출 규모 추이(총지출 기준)(단위 :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수입 기준)

□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결산(총계) 기준으로 기금 운용 추이는

- 전체 962조원 중 기금이 619조원, 일반회계 285조원, 특별회계 62조원 규모
- 2007년~2017년 기간의 기금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 2007년 327조원에서 2009년 543조원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큰 폭의 감소는 정부내부지출 계획이 전년도 144조원에서 56조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특히, 계정성 기금에서 정부내부지출 감소가 주요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 감소로 인한 것임.



〈그림 Ⅲ-2〉 재정지출 규모 추이(총계 기준)(단위 : 조원)

주: 회계·기금별 독립된 규모를 보이기 위하여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기준을 사용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 기금의 수입 구조는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차입금 등으로 구분

○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기금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 정부내부 수입이 189조 원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회수가 162조 원으로 26.2%, 자체수입이 150조원으로 24.2%, 차입금이 184조 원으로 19.1%를 차지

□ 수입 구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 여유자금회수와 자체수입의 비중은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약 5% 내외의 감소가 있었으나, 정부내부 수입의 비중이 2007년 18.3%에서 2017년 30.5%로 크게 증가함.
-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2013년과 2017년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기금예수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예탁원금회수금이 늘어난 데에 있다.

〈표 Ⅲ-1〉 기금 수입구조 추이(단위 : 억원, %)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자체수입	1,006,566 (30.8)	1,144,774 (21.1)	1,181,636 (30.8)	1,333,601 (25.6)	1,410,888 (24.2)	1,468,888 (22.8)	1,496,804 (24.2)
정부내부 수입	598,814 (18.3)	1,108,166 (20.4)	640,738 (16.7)	1,426,439 (27.4)	1,196,976 (20.5)	1,931,226 (30)	1,889,153 (30.5)
여유자금 회수	1,009,188 (30.9)	2,024,524 (37.3)	1,035,610 (27)	1,333,680 (25.6)	1,902,552 (32.6)	1,780,881 (27.7)	1,622,712 (26.2)
차입금	653,846 (20)	1,148,815 (21.2)	979,389 (25.5)	1,108,857 (21.3)	1,321,986 (22.7)	1,248,758 (19.4)	1,184,245 (19.1)
총합계	3,268,414 (100)	5,426,279 (100)	3,837,374 (100)	5,202,577 (100)	5,832,402 (100)	6,429,754 (100)	6,192,914 (100)

□ 기금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내부수입은 계정간·기금간 및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

○ 기금 수입 중 타회계의 전입금 비중이 높은 기금의 경우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기금으로 볼 수 있음.

○ 〈표 Ⅲ-3〉과 〈표 Ⅲ-4〉은 개별 기금의 운용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기금 목록으로,

- 2017년 기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23개였고,
- 이중 비중이 50%이상인 기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성), 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성), 군인연금기금(사회보험성),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성), 응급의료기금(사업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성) 등 6개.
-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5개로, 이중 비중 큰 기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사업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사업성) 등임.

〈표 Ⅲ-2〉 기금별 운용규모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2017년 기준)(단위: 억원, %)

		운용규모 (A)	정부내부수입		비중 (B/A)
				일반회계 전입금(B)	
사업성	지역신문발전기금	10,103	8,222	8,222	81.4
사업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207	80,110	80,110	79.2
사회보험성	군인연금기금	3,166,115	2,504,619	2,504,619	79.1
사업성	대외경제협력기금	858,358	590,000	590,000	68.7
사업성	응급의료기금	321,732	172,718	172,718	53.7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3,099	41,542	41,542	50.0
사업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913,316	2,387,540	593,699	20.4
사회보험성	공무원연금기금	20,630,824	3,890,697	3,610,305	17.5
사업성	남북협력기금	1,196,699	948,000	183,000	15.3
사업성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897,816	2,143,555	1,301,301	13.1
계정성	공적자금상환기금	15,894,376	15,204,819	1,800,000	11.3
계정성	양곡증권정리기금	1,922,597	1,724,491	176,991	9.2
사회보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273,960	824,086	824,086	7.3
금융성	무역보험기금	1,684,931	70,000	70,000	4.2
금융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04,835	18,000	18,000	3.0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8,312,761	195,701	184,100	2.2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2,935,409	55,214	50,800	1.7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57,729,368	25,789,684	923,819	1.6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183,224,543	83,837,073	2,776,304	1.5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13,315,998	90,718	90,718	0.7
사회보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093,375	422,631	15,500	0.1
사업성	임금채권보장기금	896,131	266,867	82	0.01
사회보험성	국민연금기금	122,128,979	10,116	10,116	0.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7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표 Ⅲ-3〉 기금별 운용규모 대비 특별회계전입금 비중(2017년 기준)(단위: 억원, %)

		운용규모 (A)	정부내부수입		비중 (B/A)
				특별회계 전입금(B)	
사업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498,849	1,439,179	1,373,779	91.7
사업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62,014	195,000	195,000	34.7
사회보험성	공무원연금기금	20,630,824	3,890,697	280,365	1.4
사업성	석면피해구제기금	66,864	752	500	0.7
계정성	공적자금상환기금	15,894,376	15,204,819	85,119	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7회계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 2017년 기준으로 기금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 전체 619조 원 중 여유자금운용이 216조원으로 34.8%를 차지

○ 정부내부지출이 162조원으로 26.2%, 사업비가 117조원으로 18.8%,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123조원으로 19.8%를 차지

〈표 Ⅲ-4〉 기금 지출구조 추이(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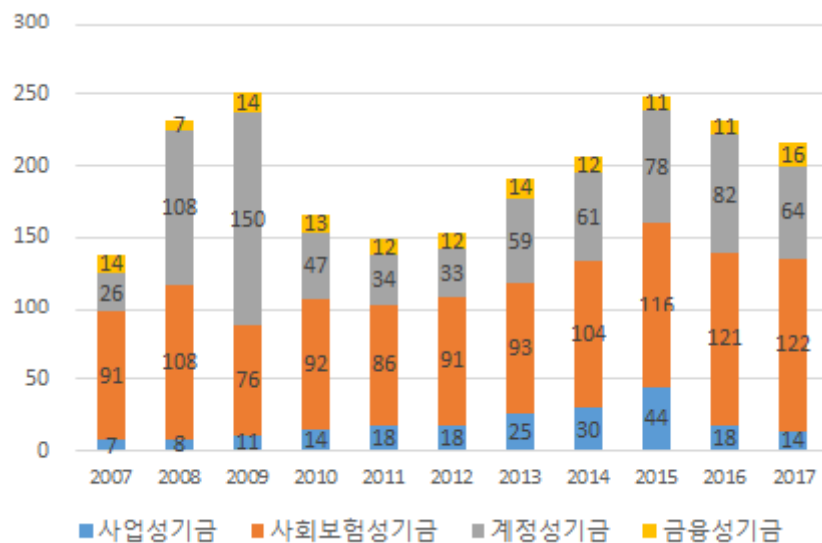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기금 운영비	17,466 (0.5)	20,432 (0.4)	25,951 (0.7)	23,720 (0.5)	23,205 (0.4)	22,173 (0.3)	21,673 (0.3)
사업비	662,775 (20.3)	839,838 (15.5)	807,402 (21)	881,093 (16.9)	1,036,065 (17.8)	1,099,033 (17.1)	1,166,748 (18.8)
여유자금 운용	1,382,026 (42.3)	2,514,302 (46.3)	1,496,345 (39)	1,917,141 (36.8)	2,487,861 (42.7)	2,322,052 (36.1)	2,157,189 (34.8)
정부 내부지출	535,376 (16.4)	1,200,258 (22.1)	520,742 (13.6)	1,360,562 (26.2)	1,144,134 (19.6)	1,752,978 (27.3)	1,621,351 (26.2)
차입금 원금상환	531,304 (16.3)	616,018 (11.4)	757,465 (19.7)	799,167 (15.4)	914,096 (15.7)	1,019,915 (15.9)	1,021,152 (16.5)
차입금 이자상환	139,074 (4.3)	235,431 (4.3)	229,469 (6)	220,894 (4.2)	227,040 (3.9)	213,603 (3.3)	204,800 (3.3)
총합계	3,268,020 (100)	5,426,279 (100)	3,837,374 (100)	5,202,577 (100)	5,832,402 (100)	6,429,754 (100)	6,192,914 (100)

주: ()는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 기금의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 특정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대기자금 포함)으로서,
 - ①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 ②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포함
- 여유자금운용을 기금 성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2017년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이 122조원으로 56.5%,
 - 계정성기금이 64조원으로 29.7%,
 - 금융성기금이 16조원으로 7.5%,
 - 사업성기금이 14조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3〉 기금 여유자금 추이(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 2017년 기준으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 13.6조원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고 그 뒤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농기관리기금 등의 순
- 〈표 III-6〉은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중이 50%이 상인 기금으로, 사업성기금 48개 중 10개의 기금이 있음.

〈표 Ⅲ-5〉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추이(2017년 기준 상위 5개)

(단위: 억원)

기금명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사업성기금 합계	72,051	110,209	178,892	254,344	441,172	178,740	136,196
주택도시기금	12,303	43,884	103,872	185,942	362,500	85,360	40,73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1,342	3,215	5,606	10,804	18,670	20,704
농지관리기금	3,138	12,190	9,633	3,924	3,920	13,171	16,266
국민체육진흥기금	3,846	4,086	6,798	1,778	2,563	1,320	5,853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632	891	1,046	2,294	5,049	4,685	4,74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표 Ⅲ-6〉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대비 여유자금 비중(2017년 기준 50% 이상 기금)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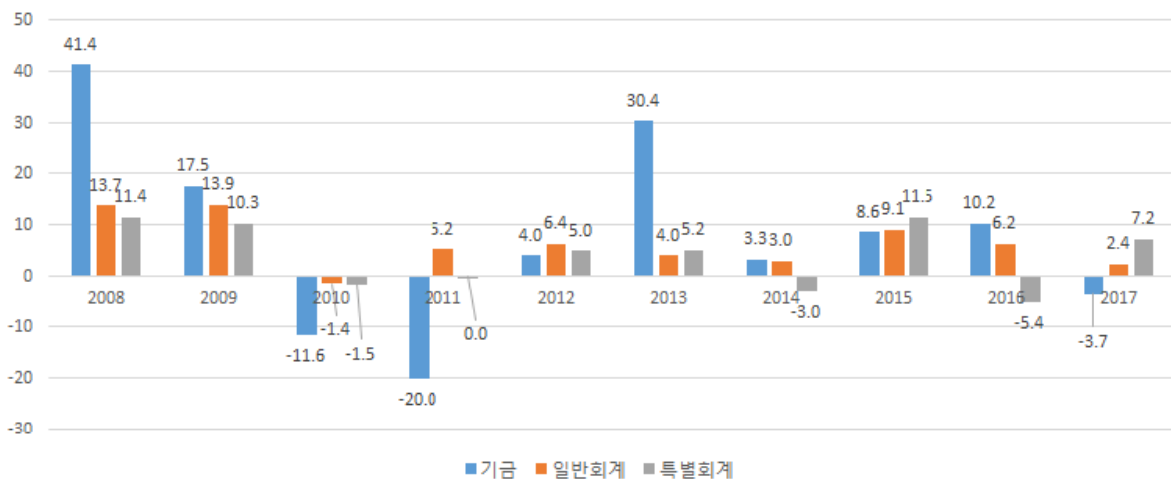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운용 규모	여유자금 운용	비중	운용 규모	여유자금 운용	비중
사업성기금 합계	1,048,091	178,740	17.1	1,073,779	136,196	12.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39	2,073	78.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928	1,772	91.9	1,966	1,425	72.5
영화발전기금	2,924	2,127	72.7	3,116	2,217	71.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7	89	34.7	519	319	61.6
국제질병퇴치기금				928	567	61.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8,382	18,670	65.8	35,381	20,704	58.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483	4,685	62.6	8,339	4,746	56.9
문화예술진흥기금	3,909	1,624	41.5	5,321	3,026	56.9
국제교류기금	1,109	319	28.7	1,323	692	52.3
근로복지진흥기금	2,715	1,389	51.1	2,873	1,451	5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 기준)

2. 기금의 신축적 운용현황

□ 일반회계와의 비교

- <그림 III-4>은 dBrain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2007~2017년 기간 동안, 기금과 예산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률 추이를 보여줌
- 증감률 추이 비교를 통하여, 기금이 예산에 비하여 신축적으로 움직임
 - 재정규모가 급감한 2011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각각 4.7%, -0.6%인데
 - 기금의 경우 -20.0%에 달했고, 2013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3.9%와 3.1%일 때 기금의 경우 30.4% 증가율을 보임.
- <표 III-8>은 <그림 III-4>에서 보여준 추이의 10년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증감률, 그리고 평균변동률 등을 보임.
 - 우선 지출의 전년 대비 평균 변동률은 기금이 15.1%로 변동이 가장 컸고, 그 뒤로 일반회계6.5%, 특별회계가 6.1%로 나타남.
 - 평균적인 변동 크기를 통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경직적인 반면, 기금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신축적임.



<그림 III-4> 기금과 회계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 추이(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표 Ⅲ-7〉 회계·기금 세출(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

	변동 범위		평균증감률	평균변동률
기금	-20.0%	~ 41.4%	8.0%	15.1%
일반회계	-1.4%	~ 13.9%	6.3%	6.5%
특별회계	-5.4%	~ 11.5%	4.1%	6.1%

주 1) 변동범위는 전년 대비 세출(지출)증감률의 최소, 최대 크기임

2) 평균증감률은 전년 대비 세출(지출)증감률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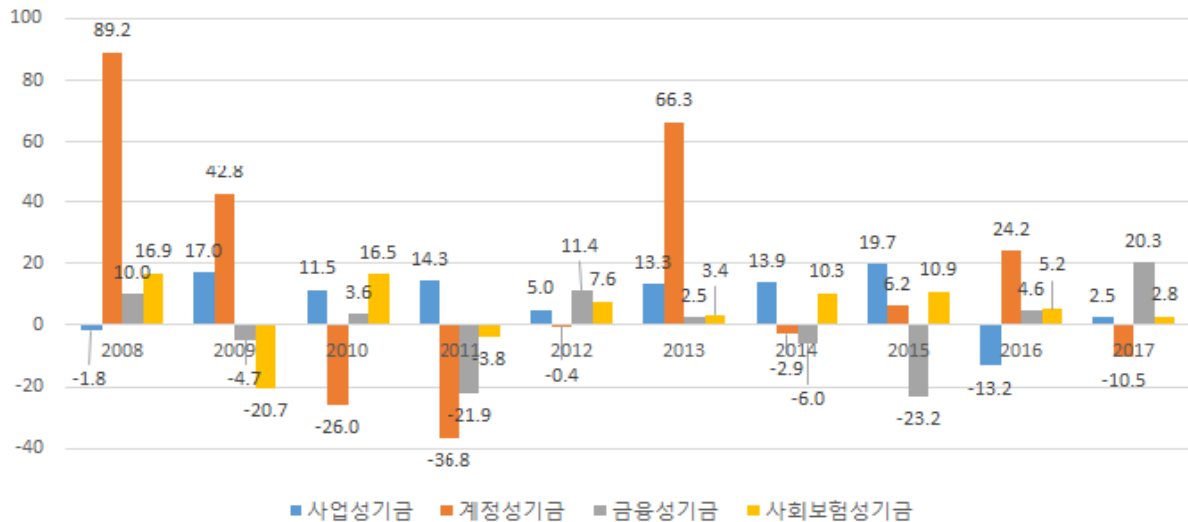
3) 평균변동률은 전년 대비 세출(지출)증감률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 기금 성격별 비교

- 〈그림 Ⅲ-5〉와 〈표 Ⅲ-9〉는 기금 성격별로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추이와 증감률에 대한 최소·최대 범위, 평균증감률, 평균변동률 등 기초통계를 보여줌
- 〈그림 Ⅲ-5〉의 4가지 성격별 기금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률 추이를 보면, 기금 성격별로 증감률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 사업성기금의 경우 2008년과 2016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
 - 계정성기금의 경우 2010년~2012년, 2014년,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하였고, 2008년과 2013년도에는 각각 89.2%, 66.3%로 큰 폭의 증가
 - 금융성기금과 사회보험성기금 역시 앞의 두 기금과 다른 추이를 보임
- 〈그림 Ⅲ-5〉의 추이와 함께 〈표 Ⅲ-9〉의 기금 성격별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 사업성기금은 전년 대비 지출액이 평균 11.2% 증가하였고, -13.2%에서 19.7% 범위의 증감률을 보임.
 - 금융성기금과 사회보험성기금은 각각 10.8%, 9.8%의 평균 변동률을 보임.
- 변동률로 보면 계정성기금에서 변동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그 원인은 계정성기금에 속한 외국환평형기금 때문임.
 - 대외적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 이후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경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출이 증가함.

(단위: %)



〈그림 III-5〉 기금 성격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감률 추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표 III-8〉 기금 성격별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

	변동 범위		평균증감률	평균변동률
사업성기금	-13.2%	~ 19.7%	8.2%	11.2%
계정성기금	-36.8%	~ 89.2%	15.2%	30.5%
금융성기금	-23.2%	~ 20.3%	-0.3%	10.8%
사회보험성기금	-20.7%	~ 16.9%	4.9%	9.8%

주 1) 변동범위는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의 최소, 최대 크기임

2) 평균증감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평균을 의미함

3) 평균변동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 사업성 기금분석

① 총지출액

○ 사업성기금별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평균변동률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평균 변동률 6.5% 보다 큰 사업성기금은 38개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양성평등기금, 응급의료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주제기금이 사업성기금 중 변동률 상위 5개 기금임.
-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5개 기금이 일반회계 평균 변동률 보다 작음.

〈표 Ⅲ-9〉 사업성기금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감(상위 5개 기금)

	변동 범위	평균증감률	평균변동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96.2% ~ 697.9%	111.7%	155.2%
양성평등기금	-42.9% ~ 627.8%	60.3%	80.4%
응급의료기금	-51.3% ~ 356.0%	48.1%	67.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2% ~ 156.1%	49.6%	49.6%
석면피해구제기금	-33.9% ~ 126.8%	35.1%	46.4%

주 1) 변동범위는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의 최소, 최대 크기임

2) 평균증감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평균을 의미함

3) 평균변동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함

4) 사업성기금 48개에 대한 개별 기초통계는 〈부록 표 2〉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② 사업비

○ 사업성기금의 년도별 지출액 중 사업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에 대한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평균변동률 6.5% 보다 큰 사업성기금은 39개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남북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 사업성기금 중 평균변동률 상위 5개 기금임.

〈표 Ⅲ-10〉 사업성기금별 사업비의 전년 대비 지출 증감(상위 5개 기금)

	변동 범위	평균증감률	평균변동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2.2% ~ 1,129.2%	295.8%	340.0%
남북협력기금	-87.1% ~ 856.4%	86.2%	162.8%
양성평등기금	-44.5% ~ 1,012.2%	99.9%	118.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2.7% ~ 534.3%	86.9%	100.3%
응급의료기금	-64.8% ~ 352.5%	48.7%	69.5%

주 1) 변동범위는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의 최소, 최대 크기임

2) 평균증감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평균을 의미함

3) 평균변동률은 전년 대비 지출증감률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함

4) 사업성기금 48개에 대한 개별 기초통계는 〈부록 표 3〉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년도 세출(지출) 결산보고서(총계기준)

3. 시사점

□ 신축적 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년 대비 지출의 증감을 통해 살펴본 사업성 기금의 신축적 운용 분석 결과,
 - 사업성기금 48개 중 변동률이 높은 기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양성평등기금, 응급의료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주제기금의 순임.
 -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5개 기금이 일반회계 변동률 보다 작음.
- 당해 연도 계획 대비 사업비의 지출을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 평균 변동률이 20%이상인 기금이 48개 사업성기금 중 8개
 - 총지출액 중 사업비의 지출 변동률이 가장 컸던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경우, 큰 자연재해가 없던 기간에는 계획대비 사업비의 지출 거의 없었으나, 대형 재해가 있었던 해의 경우당초 계획 대비 10배 이상 지출 증가
 - 이 경우 재해에 대비하고자 설치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변동률이 큰 기금을 대상으로 해당 년도에 어떤 이유에 의하여 지출 변동이 컸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 기금별 설치목적, 성격이 다른 만큼 기금별로 가지고 있는 원인이 다양함.
 - 외국환평형기금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 환경 변화
 - 양성평등기금, 보훈기금 등 법·제도·정책 변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 농어업재해보험, 남북협기기금 등 사전에 지출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변화 등임.
 - 이런 경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만 일정 규모로 기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금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금을 통한 신축적 재정운용 측면에서, 신축성이 낮은 기금은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전년 대비 및 당초 계획 대비지출의 변동률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 기금에 있어서는 향후 사업이 설치된 목적과 신축적 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금으로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함.
-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고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기금의 경우 폐지하거나, 설치 목적은 타당하지만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기금의 경우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업성기금은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금이다.
 - 사업성기금 중 신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의 편입 고려 필요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IV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강원도 발전

1. 주거정책과 주택도시기금 현황
2. 지자체 주거복지정책의 권한 이양 해외사례
3. 강원도 발전방안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IV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강원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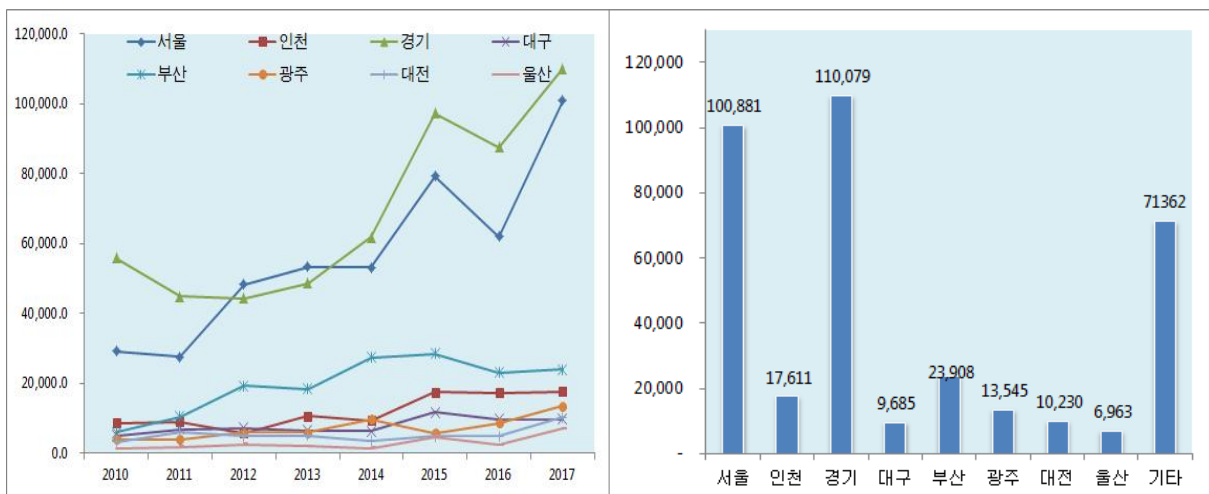
1. 주거정책과 주택도시기금 현황

1) 주거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위주로 추진

- 주택의 절대부족 시기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 안정이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
-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간적·계층적·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
-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17년 기준 전체 건설실적의 62.8%, 228,571호가 수도권 집중)
 - 공공임대주택은 택지개발사업 시 일정비율을 설정 공급하도록 법률로 강제, 그 결과 저소득층 수요가 있는 도심지 물량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경기도) 건설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급증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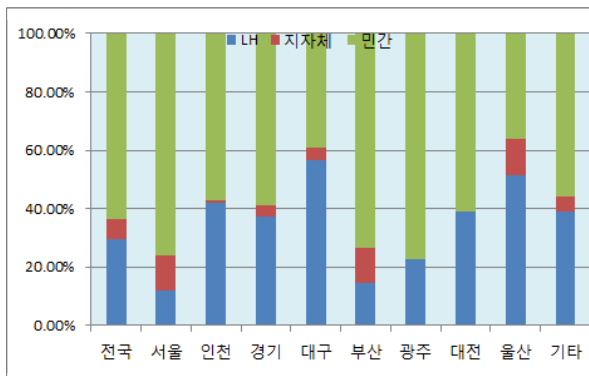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7년 말)

〈그림 IV-1〉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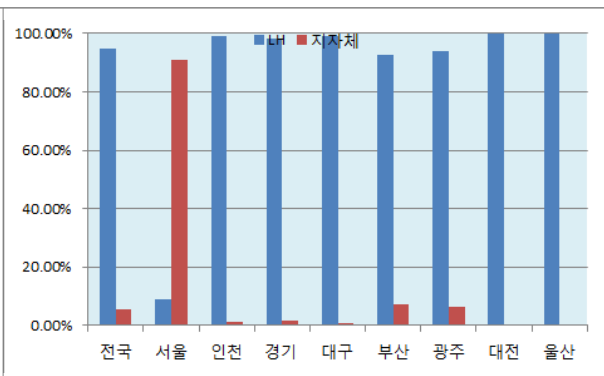
□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으로 지자체의 주택주거복지 추진에 한계

-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견지하는 수준에 그침
- 지자체는 재정지원 및 자체재원 부족, 관리부담, 주민반발 등으로 지역주택정책의 실행에 부담감이 있어 지역 주거복지향상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심화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는 재정 및 운영권한 부족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으로 대응
 - 임대주택 건설실적(2017년): 민간 232,313호(63.8%), 중앙정부 107,577호(29.5%), 지자체 24,374호(6.7%)
 -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 광주, 대전(2017년)

(단위 : %)



(단위 : %)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그림 IV-2〉 임대주택 공급주체 현황

〈그림 IV-3〉 공급주체별 국민임대주택 재고물량

□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 개선 미흡

-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구입 및 대출 부담이 2010년 대비 2018년 현재 상승→가계소득 보다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
 - PIR(Price Income Ratio): 평균 주택가격 / 평균 연소득
 - LIR(Loan Income Ratio): 평균 대출금액 / 평균 연소득
- 특히 강원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4.48배, 대출 비율 역시 2.47배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

〈표 IV-1〉 지역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대출액) 비율(PIR, LIR)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2010	7.69 (3.17)	4.50 (2.29)	4.30 (2.22)	6.36 (3.16)	3.91 (2.04)	4.33 (2.17)	3.74 (2.04)	6.27 (2.99)
2015	6.71 (2.83)	5.45 (2.42)	5.94 (2.42)	5.44 (2.53)	4.78 (2.05)	4.82 (2.21)	4.14 (1.87)	5.61 (2.52)
2018	7.87 (3.52)	5.99 (2.92)	6.16 (3.06)	6.24 (3.05)	5.35 (2.83)	5.31 (2.81)	4.38 (2.47)	6.49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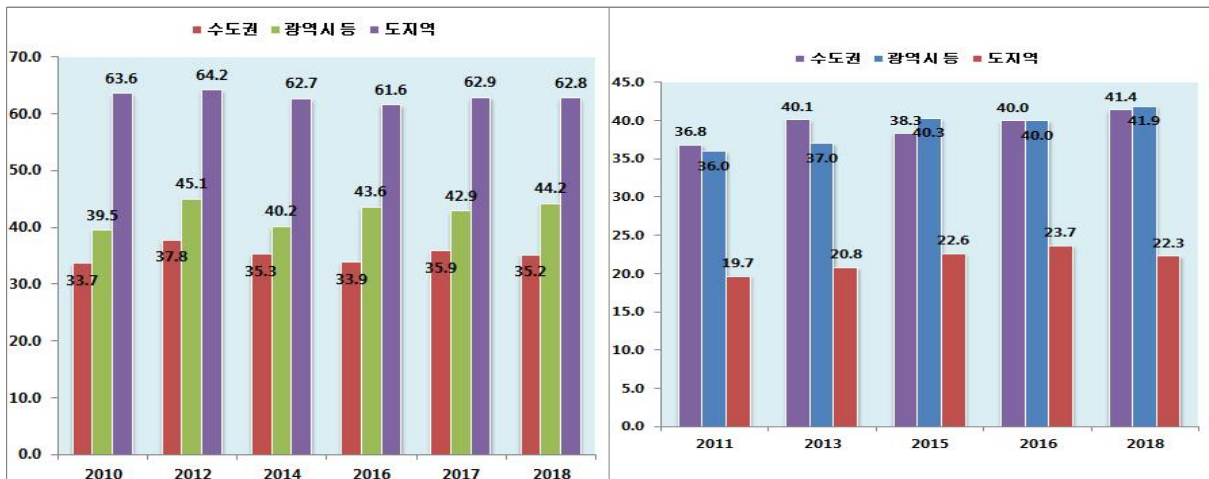
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포함) 이용자 대상으로 산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히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

○ 저소득계층의 주택소유 비율은 장기간 정체

- 2018년 기준 수도권(35.2%), 광역시(44.2%), 도(62.8%)

○ 특히 저소득계층의 월세 비율이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광역시가 더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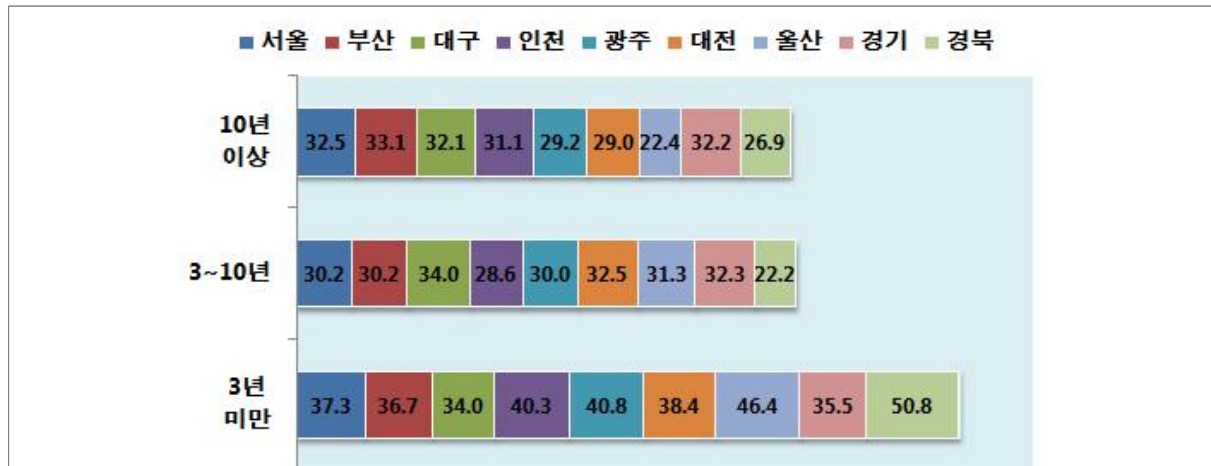


주 : 저소득층 1~4분위, 2018년부터 광역시+세종시 포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IV-4〉 저소득계층 주택소유 비율(%)

〈그림 IV-5〉 저소득계층 월세 비율(%)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이 년 이상인 가구비중이 차지
 대 특 광역시 경기도 기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림 IV-6〉 지역별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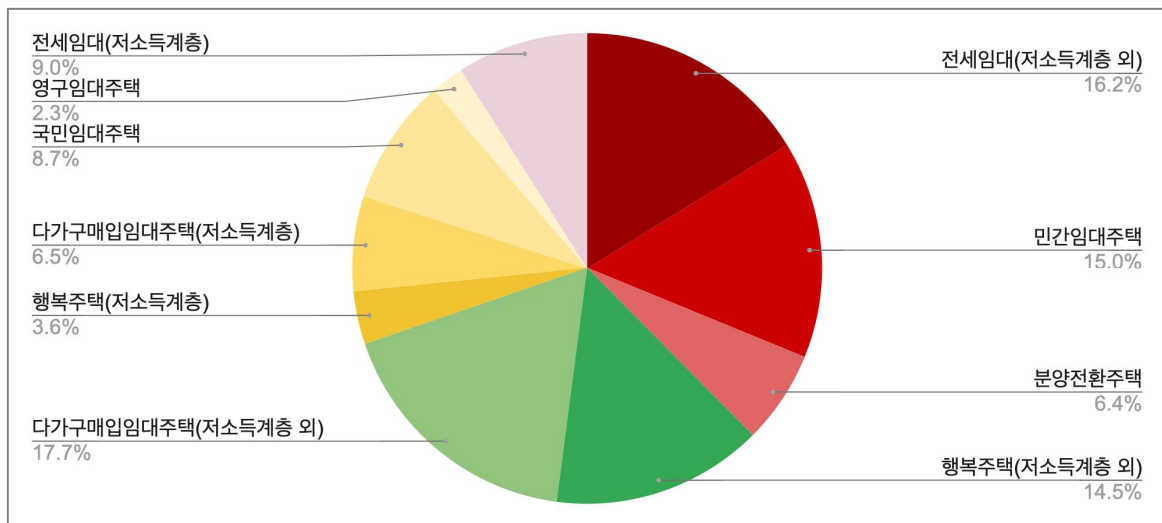
2) 주택도시기금 현황 및 문제점

□ 주택도시기금 2020년 말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말(추정)	비 고
자 산	○ 대출금		122,365,313	
	총대출금		127,206,859	
	(대손충당금)		(4,841,546)	
	○ 예치금		12,965,593	
	○ 투자유가증권		50,296,847	
	○ 미수이자 등		228,939	
	합 계		185,856,692	
부 채 와 자 본	부 채	○ 국민주택채권	59,744,273	
		○ 청약저축	74,706,961	
		○ 기금예수금	18,306	
		○ 유동성장기부채 등	23,205,817	
		○ 미지급이자 등	2,021,108	
	소 계		159,696,465	
	자 본	○ 기본순자산	343,000	
		○ 적립금및잉여금	23,756,766	
		○ 순자산조정	2,060,461	
	소 계		26,160,227	
	합 계		185,856,692	

-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18년 19조 9,964억 원에서 2020년 23조 7,567억 원으로 확대
-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은 저소득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함.
- 하지만 정부는 일부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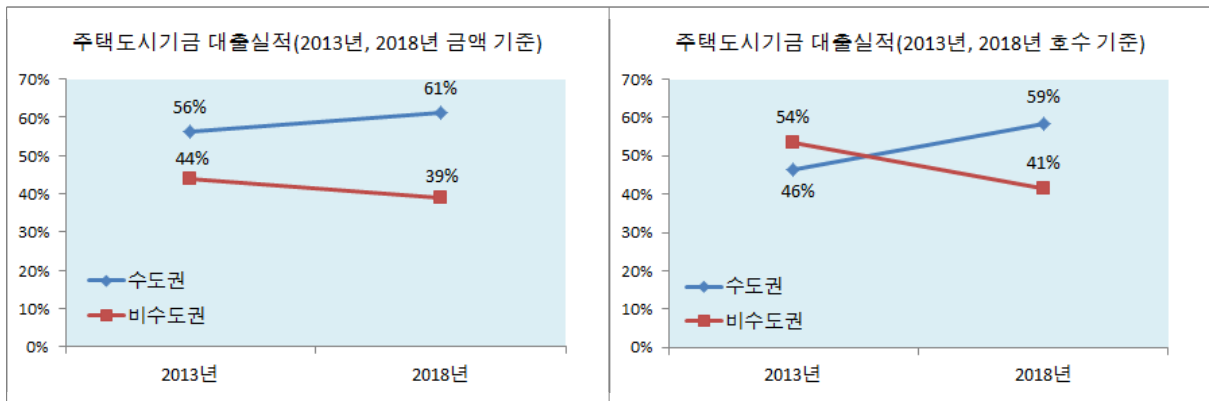
〈그림 IV-7〉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 한편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안에서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비중은 모두 합해도 21.2%에 불과하며, 전세임대 중 저소득계층에 할당되는 물량까지 합하더라도 30.2% 수준임.
-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아닌, 건설임대 유형 중 저소득계층이 주요 대상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하면 11.0%인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의 비중인 15.0%보다 낮음.
- 저소득계층과 그외 계층이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예산을 보더라도 저소득계층에게 할당된 예산은 3조 463억 원인데 그외 계층에게 할당된 예산은 7조 6,762억 원으로, 2.5배 가까운 큰 차이가 나타났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 주택도시기금 대출실적 추이를 통해 서민주택금융 혜택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주거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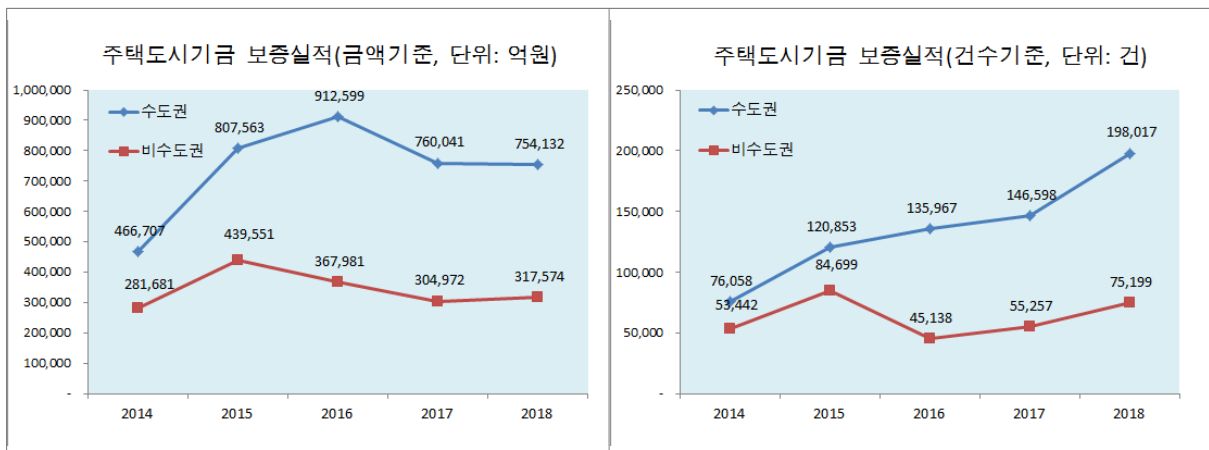


주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그림 IV-8〉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도시기금 대출실적 비교(단위 : %)

□ 주택도시기금 보증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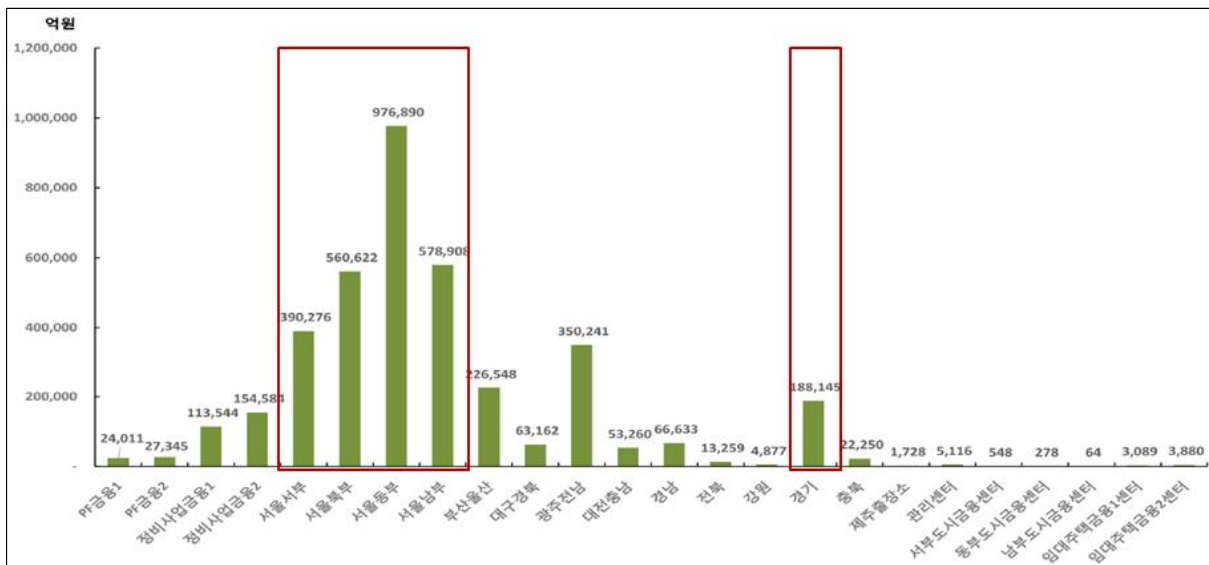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5년(2014~2018년) 보증실적을 지점별 발급 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과 건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



주 : 수도권-서울서부/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지사+경기지사
 비수도권-충북/부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경남/전북/강원지사+제주출장소
 기타(제외)-PF금융센터, 정비사업금융센터, 임대주택센터, 권역별센터 실적 제외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통계연보(2018)

〈그림 IV-9〉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도시기금 보증실적 비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8년 기준 지점별 보증잔액 또한 서울4개 지사 및 경기도 지사의 보증잔액(269조4,833억원)이 전체 보증잔액(382조9,258억원 / PF금융, 정비사업금융 포함)의 70.4%를 차지해 최근 보증실적이 수도권으로 집중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공급 측면의 혜택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통계연보(2018)

〈그림 IV-10〉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별 보증잔액(단위 : 억원)

- 주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내재
 - 주택정책은 단순한 주택수급관리를 넘어 주거급여, 주거상담, 일자리 창출, 심리상담 및 교육, 리모델링, 복지서비스 등이 지역별로 특화될 필요성이 증가
 - 지자체가 지역현장에서 직접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 이를 통해 독창적인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모델 발굴 가능
 - 지자체의 독립적인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운용자금 확보와 법률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

2. 지자체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이양 해외사례

- (영국) 9개 광역권에 각각 주택위원회를 운영하며 중앙·지방정부는 토지, 정보, 자금 등을 제공하고 규제를 통해 시장 조절 역할 수행
 - 영국은 1960년대부터 주택정책의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추진, 중앙, 지방, 건설업자, 지역공동체 등 다자간 참여가 증대되었고 이는 거버넌스체제 구축·발전의 계기가 됨
 - 주택정책을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과 연계·추진하며 중앙에서 세부 계획을 집행하지 않음
 - 9개의 광역주택위원회는 주택정책 수립에서부터, 주택자금의 사용까지 주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
 - 위원회는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의회, 공공기관, 관련업자, 시민단체, 거주자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광역 단위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체계적 주택정책 추진)

〈표 IV-2〉 영국 정부 주택정책의 변화

정부정책 변화	과거(~1980년대)	현재(1990년대~)
역할	주택공급(provider) ⇒	촉진(enabler)
자금	보조금(subsidy) ⇒	투자(investment)
관리	복구(rehabilitation) ⇒	신규(reorientation)
중점주택	임대주택(council ownership) ⇒	적정주택(affordable house)
정책주도	중앙과 정부의 마찰 (Central-Local Dynamic) ⇒	광역권 거버넌스 (Regional governance)

자료: 국토연구원(2005),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제 정립방안 연구

- (일본) 다양한 지역수요 반영을 위해 지자체가 주택정책 주도·지방분권화 시행
 - 일본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분명했으나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으로 수평적 역할분담이 중요해지고 거버넌스적인 정책 추진 가능해짐
 - 중앙정부 하향식 체계로 공급하던 신규주택은 지역별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2005년 특별조치법이 제정
 - 중앙정부는 공공·민간주택의 공급목표량을 제시하는 대신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주택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필요경비를 일괄 지급

- 지자체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비·공급과 주택 내진 기능 향상,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함
- (독일) 지자체의 독자적인 주택정책 추진으로 연방정책과 일정한 독립성 유지
 - 독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조정하며 주택시장 내 갈등을 해결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중앙정부의 계획은 지방 세부 계획을 간섭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집행함
 - 주택정책 수립체계의 명확화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하위지자체가 운영방침을 수립, 이는 상위 지자체와의 무질서한 중복 정책입안을 피할 수 있게 하며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입안을 가능하게 함
 - 연방정부·주정부는 지자체의 계획이 국토정비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만을 평가

3. 강원도 발전방안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1)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 지역성·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주택주거복지정책 필요
 - 주택의 절대부족 시기는 중앙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공급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
 - 그러나 주택의 양적 안정화에 도달한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주택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 증가
 - 주택시장의 지역적 특수성은 향후 산업기반, 인구통계, 가구형태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 따라서 지역 주택정책은 지역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러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요구
 - 이미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권한은 지자체에 위임(지방자치단체법)되었으며, 이와 연관된 주택관련 계획 및 정책도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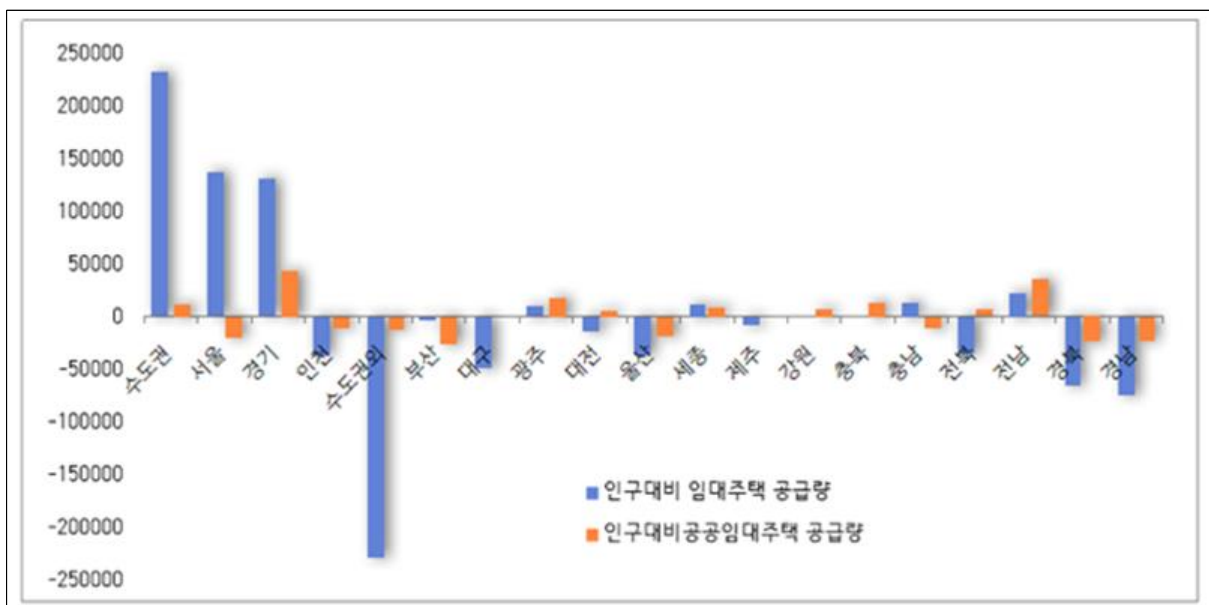
-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과 직접적인 운용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사업 진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주거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
 - 지역별, 주택규모 및 주거형태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수요자에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
 - 각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정책마련 및 추진동력 확보
 -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전달체계(면대면 서비스)가 가능하여 대민 만족도가 향상
-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운용 효율성 극대화
 - 도시재생사업들의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은 사업성격상 지역맞춤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확보 경쟁의 결과
 -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100여 곳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로 추진 중이나 예산집행률은 높지 않음(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조금의 실제 집행률은 34.0%에 불과)
 - 2019년 5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은 11.7%에 불과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광역시·도별 예산집행률과 세부추진현황은 미공개
 -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을 통해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가능할 경우 각 지자체의 현실과 부합되는 사업계획, 주민동의가 가능해 보다 실행력 있게 집행·관리될 수 있음
-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과거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인허가 등 단순업무처리에 집중해 왔던 지자체가 정책의 수립, 집행 및 관리 능력,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2) 강원도 주택도시기금공사의 기대효과와 적정 임대주택 공급량

□ 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시 기대효과

- 2020년 말 추정되는 청약저축기금은 74조 7,069억 원으로 이를 인구비례로 분할할 경우 2조 2,208억 원을 강원도에 이양가능(강원인구는 전체 대비 2.97%)
-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강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고 지자체차원에서 지역의 부족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강원지역의 인구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5.83%로 전국 평균 5.84%의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7%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공공임대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볼 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지자체이양과 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으로 지자체의사업추진 권한을 강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으로 임대주택 권한 이양 시 지역별 필요공급량



〈그림 IV-11〉 지역별 인구대비 임대주택 필요 공급량

〈표 IV-3〉 인구수대비 임대주택 공급비율(인구 : 2015년, 임대주택 : 2018년)

	2015년도 인구(명)	공공+민간 임대주택(호)	공공임대 전체(호)	인구대비 임대주택 비율	인구대비 공공임대 주택비율	인구대비 임대주택 공급량의 과소	인구대비공 공임대주택 공급량의 과소
전국	51,069,375	2,984,664	1,570,242	5.84%	3.07%		
수도권	25,273,824	1,706,214	789,344	6.75%	3.12%	229,128	12,244
서울	9,904,312	714,853	284,257	7.22%	2.87%	136,012	-20,273
경기	12,479,061	859,347	427,715	6.89%	3.43%	130,029	44,018
인천	2,890,451	132,014	77,372	4.57%	2.68%	-36,914	-11,501
수도권외	25,795,551	1,278,450	780,898	4.96%	3.03%	-229,128	-12,244
부산	3,448,737	198,793	79,335	5.76%	2.30%	-2,763	-26,704
대구	2,466,052	94,825	74,991	3.85%	3.04%	-49,299	-833
광주	1,502,881	96,656	64,675	6.43%	4.30%	8,823	18,466
대전	1,538,394	76,483	53,281	4.97%	3.46%	-13,426	5,980
울산	1,166,615	30,905	17,924	2.65%	1.54%	-37,276	-17,946
세종	204,088	24,382	15,189	11.95%	7.44%	12,454	8,914
제주	605,619	27,055	17,674	4.47%	2.92%	-8,339	-947
강원	1,518,040	88,482	54,131	5.83%	3.57%	-237	7,455
충북	1,589,347	93,307	62,646	5.87%	3.94%	420	13,778
충남	2,107,802	136,718	53,249	6.49%	2.53%	13,531	-11,560
전북	1,834,114	71,714	61,599	3.91%	3.36%	-35,478	5,205
전남	1,799,044	128,030	89,646	7.12%	4.98%	22,888	34,330
경북	2,680,294	90,718	57,189	3.38%	2.13%	-65,927	-25,223
경남	3,334,524	120,382	79,369	3.61%	2.38%	-74,499	-23,158

3) 지방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방안

□ 지방이양일괄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하 지방일괄이양법은 2020년 2월 18일에 개정되었으며, 중앙정부 각 부서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일괄이양법은 16개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46개 법률,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6개 법률을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
- 본 연구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9개 법률이 개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률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위의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 내용
- 위의 법률의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관련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에 대한 취소·변경 등 조치(국가와 시장·도지사),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변경, 휴업, 폐업등 (시·도), 측량업 등록(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국가와 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양도, 폐업신고,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시·도),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국가와 시·도),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시·군·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 권한 위탁(시·군·구)¹⁾
- 지방정부로 많은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무를 담당할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의 지침서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순조롭게 지방정부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권한 역시 같이 이양되어야 하며, 재정권한이 없이 단순히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이번 법률 개정에서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의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이 이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 주거기본법

- 2000년 초반까지 중앙정부에서 주택종합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왔으나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전국단위의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1) 하혜영(2020),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주택종합계획의 근거법은 2015년 6월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주택법 7조 1항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주거기본법 5조로 이전하였으며, 명칭 또한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
- 주거기본법 6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서 지방정부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는 규정이나 위반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짐
- 주거기본법 5조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5조 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외에 주거기본법 5조 2항부터 8항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거기본법 6조에서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7조에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거기본법 5조와 6조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며,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동법 6조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동법 5조에서 정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동법 6조 5항에서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어 지방정부에서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에서 정한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은 정책의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이 정책 수행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존의 법률에서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종합계획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수립, 승인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이 정책지침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면 권한남용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추가적으로 주거기본법 7조에서도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에 대한 내용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업무는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이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주택정책의 자율성을 더 주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정의, 3조에서는 적용대상, 4조에서는 주택의 공급대상을 담고 있으며, 5~8조는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을, 9조~14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루고 있음
- 동법 제15조에서 24조까지는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15~18조는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19~22조는 입주자 모집절차, 23~24조는 주택공급 신청방법을 담고 있음

- 동법 제25조부터 49조까지는 주택공급방법에 대해 담고 있으며, 25조~26조는 주택공급의 기준, 27~29조는 일반공급, 30~34조는 우선공급, 35~49조는 특별공급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제50조~61조는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해 담고 있으며, 50~56조는 입주자 선정, 57~58조는 당첨자 관리, 59~61조는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에 대해 다룸
- 마지막으로 제62~63조는 보칙을 다루고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역시 앞의 주거기본법과 같이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택공급을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제15조~18조의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19조~22조의 입주자모집 절차, 제49조의 특별공급 비율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시 사업승인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어 주택공급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지역에 특성에 맞게 주택공급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특히 입주자 선정이나 당첨자 관리 방법은 지역마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방정부로 이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별공급 역시 지역마다 주택공급 상황이나 다른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에 맞게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항목들, 청약가점제나 제54조의 재당첨제한과 같은 부분은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청약가점제와 재당첨제한 뿐만 아니라 입주자 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분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래의 내용은 정성훈(2020)의 연구를 인용함

- 주택공급은 주택이 있어야 하는 수요자(국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지자체, 공사, 주택사업자 등), 입주자 통장 및 당첨자를 관리하는 은행권(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 및 정책 입안, 실행, 관리 감독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질 경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방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이나 가점제의 내용이 다르게 되면, 사업 주체는 사업장별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면서 인허가 업무도 달라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됨. 은행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달리함에 따라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음. 추가된 비용은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주택공급계획을 전국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지역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때 장기적인 주택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거주 이전이나 선택의 자유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이외의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방안

- 주택공급이 아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서도 협의·지정·승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이나 LH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자체로 사업권한을 이양해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자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LH공사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지역개발공사로 사업권한을 이양하거나 아니면 강원도가 일정비율만큼 참여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미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LH공사로부터 사업권한을 이양 받아 SH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권한을 이양받기 시작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SH공사는 급격한 외형성장을 이루었음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할 때 행정적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며, 위의 사

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에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자체로 들어가게 되므로 재정권한을 이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됨

- 위의 사례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토지이용이나 주택유형, 각종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주택정책의 지방이양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무리 없이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외의 다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조직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가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정에 대해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권한 이양 시에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될 경우에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이양하여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가 정부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립적으로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권한 이양은 현실적으로 한 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어렵고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도 시간, 행정, 재정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바로 이양하지 못하여도 당분간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주택공급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급의 필요량, 공급필요시기, 공급필요지역 등을 지방정부에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며,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통제가 가능하므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함

- 그리고 중앙정부는 정책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건설, 운용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나 지역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상황이나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주택도시기금의 이양방안

- 주택정책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
-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
-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주택도시기금의 2020년도 말 추정 자산규모는 185조 8,567억 원이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은 59조 7,443억 원, 청약저축은 74조 7,070억 원임

〈표 IV-4〉 주택도시기금 추정 재무상태표(단위 : 억원, %)

구분			2020말(추정)	비 고
자 산	○ 대출금		122,365,313	
	총대출금		127,206,859	
	(대손충당금)		(4,841,546)	
	○ 예치금		12,965,593	
	○ 투자유가증권		50,296,847	
	○ 미수이자 등		228,939	
	합계		185,856,692	
부 채 와 자 본	부 채	○ 국민주택채권	59,744,273	
		○ 청약저축	74,706,961	
		○ 기금예수금	18,306	
		○ 유동성장기부채 등	23,205,817	
		○ 미지급이자 등	2,021,108	
	소계		159,696,465	
	자 본	○ 기본순자산	343,000	
		○ 적립금및잉여금	23,756,766	
		○ 순자산조정	2,060,461	
	소계		26,160,227	
	합계		185,856,692	

〈표 IV-5〉 주택도시기금 추정손익계산서(단위 : 억원, %)

구 분		2020말(추정)	비 고
수 익 부 문	○ 사업수익	3,165,437	
	- 대출금 이자	2,985,829	
	- 예치금 이자	179,608	
	○ 사업외 수익	1,031,084	
	- 복권기금수익금	550,361	
	- 기타 영업외수익	480,723	
합 계		4,196,521	
비 용 부 문	○ 차입금 이자	2,411,200	
	○ 기금 운영비	177,483	
	○ 이차보전지원	250,507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3,250	
	○ 대손충당금전입액	960,366	
	○ 사업외비용	968,181	
	비용계	4,870,987	
	당기순이익	(674,466)	
합계		4,196,521	

- 주택도시기금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크게 국민주택채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과 청약저축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음
- 제1종부터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었으나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발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음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을 말함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주택공급권한이나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면 국민주택채권도 지방정부의 공급물량에 비례하거나 인구의 비례로 국민주택채권의 운용권한을 이양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청약저축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약저축 역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국민주택채권과 같이 운용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약저축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법은 인구비례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비율만큼으로 분할하여 이양하는 방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에서 청약저축액을 적립하고 관리·운용·조성하다가 청약대기자의 실제 주택구입시기에 해당 지자체로 지불하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사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균형발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여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을 지방정부로 이양 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여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약저축 약 74조원을 강원도 인구 비례로 분할하여 강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양할 경우 약 2조 2,208억 원을 이양할 수 있음
-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행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권리에 따른 의무가 생기게 되며, 지자체는 주거복지향상이나 주택시장안정과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명문화 하는 것도 필요함
-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에 부채 역시 지자체로 이양되고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채권은 지자체로 이양하지 말고 청약저축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또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로 인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거나 주택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재정예산의 삭감이나 회수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의 상황에는 예산 증액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권한이 강화된 지자체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방이양 역시 검토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되,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앙정부에 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지자체가 주택정책을 위해 사용가능한 재원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분간 지자체에서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V 정책적 제언

V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 관리 기금 활용을 위한 조직과 제도 마련

○ 도청 내에 전담 조직 구축

- 도청 예산과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용 관리, 사회공헌기금 확보 운영 등을 담당
- 그러나 중앙정부 관리 기금의 활용을 위한 업무 분장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중앙정부 관리 기금의 활용을 위한 업무 분장이 시급함.
-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분장을 선행하고 단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의 기금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제도적 개선 추진

-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지방정부가 참여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필요함.
- 2020년 2월18일의 지방이양일괄법에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권한의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이러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해당 조항을 넣는 것과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등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함.

-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서도 협의, 지정,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역량을 쌓기까지 일정 비율을 참여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금의 지방 이양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함.
- 일괄적으로 권한 이양할 때 예측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 이양 방안도 검토 필요함.
-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도권에 치중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

□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추진

○ 설립 추진 TF 구성

- 도청 예산과의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도의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 강원개발공사와 함께 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강원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의 중점을 두어야 함.

○ 기능과 역할 규정

- 청약저축기금의 강원도 기여분을 기반으로 설립하여 지역에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 공급.
- 중앙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 정부로 귀속시키는 역할